

聯結財務諸表 監査意見에 관한 研究

朴相鳳*

〈목 차〉

I. 序論	IV. 聯結財務諸表 監査意見分析
II. 理論的 考察	1. 標本選定과 監査意見의 年度別 推移
1. 聯結財務諸表의 性格	2. 他監査人의 意見 活用現況
2. 美國, 英國, 日本, 國際會計基準, 韓國의 聯結會計 聯結會計 比較	3. 從屬法人의 實態
III. 先行研究와 聯結財務諸表 監査報告書 提出對象 業體現況	4. 監査報告書 特記事項
1. 先行研究	V. 結論
2. 聯結財務諸表 監査報告書 提出對象 業體現況	參考文獻
	Abstract

I. 序 論

현재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실제로 기업의 평가나 투자의사결정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59년에 공포된 ARB No.51에서 연결회계기준을 최초로 성문화하고 그 준수를 의무화하였으며 그 이후 수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기준을 수립하여 국제회계기준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회계기준에 영향을 주어왔다. 일본의 경우도 1977년 4월 1일 이후부터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케 하였으나, 최근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 동의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도 1976년 6월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기준을 제정, 공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기준이 제정되고 연결재무제표의 공시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의 경제성장기를 기반으로 1974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정」과 1975년 재무부령으로 공포된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에 의해 1976년부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최초로 규정되었다. 1981년 12월에 연결관련 조항이 「기업회계기준」으로 통합되었으나 1985년 1월 「연결재무제표기준」이 별도로 제정되어 연결회계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게 되었고 1987년 4월에는 「연결재무제표」의 하부규정으로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준칙이」이 제정되었다.

1992년 4월 증권거래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연결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의견을 사업보고서에 첨부토록 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게 된다. 1993년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을 개정하여 연결재무제표작성 및 외부감사의무화를 1994년 12월 결산법인부터는 전체외부감사대상회사로 확대하게 된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연결작성 및 지분법적용은 1995년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현재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 모든 국·내외의 주식회사가 연결재무제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외감법 제13조 및 기업회계기준 제6조에 의거하여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연결재무제표준칙에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준칙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정보는 정보이용자들의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이 논문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회사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360개의 연결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理論的 考察

1. 聯結財務諸表的 性格

회계는 특정한 경제적 실체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회계가 보고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실체란 법률적으로 독립된 개별적 실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으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 즉 개별재무제표만으로는 관련된 기업들의 경제적 실질을 총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이 지배·종속관계를 성립하여 기업집단을 형성할 경우에, 그 기업집단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이에 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작성되는 재무보고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한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경우, 소속된 개별기업들은 각각 법률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기업들마다 별도의 회계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별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결재무제표는 기업집단을 형성한 둘 이상의 관련된 기업들을 하나의 통합된 경제적 실체로 가정하고,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이다.

연결재무제표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회계실체로 가정하고 작성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련된 소속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즉 기업집단 내의 투자나 내부거래에 대해서 그 효과를 상계·제거하는 절차를 통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연결재무제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정보이용자)들에게 지배·종속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을 보고하여 경제적 단일체로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연결재무제표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목적에 관하여 특별하게 표명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공인회계사회 American Institute of Public Accountants(AICPA)가 공표한 「회계연구공보 제51호 :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목적을 주로 지배회사의 주주와 채권자의 효익을 위하여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들을 하나

이상의 지점 또는 부문을 갖고 있는 단일회사로 간주하여, 그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데 있다.¹⁾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계연구공보 제51호의 규정은 연결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보다 한층 더 의미가 있으며, 또한 그 집단 내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 직접·간접으로 지배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적정한 재무보고를 위해서 연결재무제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美國, 英國, 日本, 國際會計基準, 韓國의 聯結會計 比較

기업회계발전이 자본주의 경제발전과 병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면 자본주의 경제가 선진제국보다 늦게 발전된 우리나라는 회계발전이 늦은 것도 당연하다고 보겠다. 그 중에서도 연결재무제표의 역사는 매우 일천하다. 연결재무제표가 가장 일찍이 등장하였고 활성화된 나라는 미국이며, 영국도 역시 1920년부터 연결재무제표가 도입된 이후 급속도로 보급되었다. 이들 두 나라는 1930년대부터는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연결재무제표가 주요 회계정보로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기타 유럽 국가나 일본에서도 연결재무제표의 채택이 미국이나 영국에 비하여 뒤늦게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연결재무제표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결회계의 발전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선진외국의 발전동향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1 미국의 연결회계

미국에서 연결회계가 생성하게 된 배경에 관해서는 이미 서술한 바 있지만 초기에는 개별재무제표가 주된 것이었고 연결재무제표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다. 그 후 기업의 집단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연결회계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연결회계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 졌다. 현재 미국의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회사는 개별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연결종속회사의 재무제표도 결합재무제표를 함께 첨부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재무제표들은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²⁾

1) AICPA, ARB No. 51, 1959, p. 1.

2) 남상오, 우리 나라 그룹기업의 회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0, p. 133.

오늘날 미국의 회계실무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공식적인 재무제표로 공표되고 있어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체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결납세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1917년 전시세입법을 제정하여 계열기업에 대해 연결납세신고를 강제하고 1918년 법에서부터 1921년 법을 통하여 연결신고를 요구하였으며, 1922~1933년까지의 사이는 연결신고의 채택여부를 기업의 자유선택에 위임하였다. 1934~1939년까지는 一部の 철도회사를 제외하고는 연결신고는 인정되지 않았다가 그 후부터는 엄격한 법제하에 임의제의 특권으로서 인정되어 오고 있다.

또한 미국의 회계규제측면에서 보면 SEC는 당초에는 증권거래법 운용회사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을 강제하지 않았으나,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모회사의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SEC는 regulationS-X 제4조 및 이와 관련한 회계연속통칙에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³⁾ 따라서 SEC는 그 후 1940년부터 연결회계를 강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9년에 공표된 ARB No. 51은 당시까지 통일되어 있지 못하던 연결회계기준을 최초로 성문화하고 그 준수를 의무화했으며, 1971년 APB opinion No. 18은 그 후 일부 수정 보완되었으나 기본 골격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며 전세계적인 지지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2.2 영국의 연결회계

영국에서 최초로 연결재무제표가 공표된 것은 1920년경이며, 문헌에 기록된 것은 1934년 Dun Lop Robber CO., LTD가 공표한 연결재무제표이다.⁴⁾ 그 후 1939년 2월에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연결회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48년 제정된 회사법 제150조는 회사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에 첨부하여 그룹재무제표를 公示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회사는 타회사가 그 이사회를 지배하는 상태의 경우에 있어 당해회사 내지는 타회사에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국의 연결기준의 특징으로 지분비율기준 외에 지배력기준의 적용을 알 수 있다.⁵⁾ 즉 타회사에 주식의 50%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3) SEC, regulationS-X Article 4.

4) 番場嘉一郎外, 聯結財務諸表-理論, 實務, 演習-中央經濟史 1977, p. 33.

5) 元亭淵, 연결재무제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p. 17.

타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나 그 회사 자신이 영국 내에 설립된 타회사의 100% 소유 자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1948년 회사법은 연결의 범위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동법 이후 영국의 연결재무제표 등 그룹재무제표의 작성공시가 강제되고 있다. 1966년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종전보다 상세히 작성하도록 관련법안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에 연결재무제표는 보충적 자료로서의 위치에 지나지 않는 점이 미국의 경우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2.3 일본의 연결회계

일본에서 최초로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된 것은 1960년 일립제작소가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공표한 것이다. 이어 1960년대 초반부터 일본에서는 자본자유화가 가속되어 '소니(sony)'사가 미국내에서 채권발행을 위하여 New York SEC에 등록서류로서 제출하기 위하여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 sony를 뒤따라 일본의 많은 재벌 그룹들은 New York 이나 London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1960년대에 들어 일본기업들의 집단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자 대장성은 연결회계정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1965년 3월에 회계원칙제정기구인 기업회계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동심의회는 1967년 5월에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시기상조라는 여론에 부딪혀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⁶⁾ 그러나 1968년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준을 개정하여 주식을 새로 상장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이 부분적으로 의무화되었으나 이러한 일부의 경우 외에는 연결회계의 실무는 일반화되지 않았다. 그 후 1970년대에 이르러 일본에서는 연결재무제표원칙, 연결재무제표 실시준칙 등을 발표하여 연결재무제표제도화에 따른 기초작업을 완료하였고, 이후 1977년 4월 1일 이후부터 개시되는 회계기간에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기초를 둔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였다.⁷⁾

6) 會田義雄, 企業結合會計, 中央經濟史, 1975. p. 83.

7) 고정섭, 연결재무제표론, 다산출판사, 1986. pp. 26~28.

또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여 공인회계사나 감사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연결회계가 제도화되었고, 1983년 4월 1일부터는 지분법의 전면적 실시를 강제 적용토록 하였으나 상법 등에 법제화되지는 않았다. 또한 일본연결회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결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에 첨부되는 보충적 자료로서의 위치를 지니지만 연결범위 판정기준은 미국의 지분비율기준(50% 초과)만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다.

2.4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은 1973년에 창설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 IASC)가 제정하는 회계기준이다. IASC는 재무제표 작성시 준거해야 할 회계기준을 제정, 공표하고 또 그러한 회계기준이 전세계적으로 수용되고 준수되는 것을 촉진시키는 국제기구로서 1967년 6월에 기준3호인 「연결재무제표」를 발표하였다. 물론 IASC가 정하는 국제회계기준은 적용을 권장할 뿐이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의 기준이 존재할 때에는 국내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규정이 없을 때는 IASC기준을 당연히 적용해야 할 것이며 더욱 세계의 회계기준이 점차 통일화되어 가는 현재의 추세하에서는 상기기준 제3호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준이라 하겠다. 연결회계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제3호의 특징을 보면 첫째, 연결범위를 과반수의 지분소유 이외에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경영자의 재무 및 영업방침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 지배력기준도 채택하고 있다. 둘째, 종속회사이지만 지배가 일시적이거나 영업의 종류가 매우 달라서 개별재무제표가 더 유용한 경우는 연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기타 회계방침의 불일치에 대한 공시방법, 투자가치의 하락에 대한 처리방법, 외부주주지분의 표시방법, 투자주식의 처분손익처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2.5 우리 나라의 연결회계

우리 나라는 기업의 계열화, 집단화의 역사는 매우 일천하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1968년 11월 22일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증권시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자 1973년 1월 5일에는 「기업공개촉진법」을 제정·공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기업 공개무드가 무르

익고 이어 증권시장이 활발해 짐에 따라 증권인구가 증가하였으며 기업의 집단화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연결재무제표 제도는 1974년 7월 18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과 1975년 4월 17일 재무부령으로 공포된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에 의거 197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회계에 적용되는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도 1976년 7월 22일에 이를 개정하여 연결회계를 도입하였다. 이후 1980년 12월 31일 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 규정과 규칙이 단순 통합되어 1981년 12월 23일 「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되었으며 연결재무제표는 동 기준의 한 조항으로 규정되었으나 규정의 내용은 예전과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1984년 9월 1일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어 연결회계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고 연결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 기준 제6조를 개정하여 연결범위를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1985년 1월 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이 제정되어 연결회계개선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개별회계와 별도로 수립하였으며 연결범위 판정기준으로 지분율기준에 지배력기준을 추가하여 실질지배력을 갖는 회사를 연결범위에 포함시켰다.

그 뒤 연결재무제표기준은 1987년 4월 27일 일부조항을 개정하였으며 동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준칙」을 동 일자로 새로이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중 1992년 4월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상장법인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공시 및 외부감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면적인 개정을 보게 된 것이다. 따라서 1993년 12월 외감법을 개정하여 연결재무제표작성 및 외부감사의무화를 1994년 12월 결산법인부터는 전체외부감사대상회사로 확대하게 된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연결작성 및 지분법적용은 1995년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현재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 모든 국·내외의 주식회사가 연결재무제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외감법 제13조 및 기업회계기준 제6조에 의거하여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연결재무제표준칙에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준칙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Ⅲ. 先行研究와 聯結財務諸表 監査報告書 提出對象 業體現況

1. 先行研究

연결재무제표의 정보효과는 회계학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과거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연구는 감사되지 않은 상태로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보충적 정보로서 제공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박종필(1992)은 연결이익정보는 주주총회 전후 10일간의 비정상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또한 개별기업 이익정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규연과 김정원(1994)은 연결이익정보를 연결이익과 개별이익의 차이에 따른 더미변수로 정의하여 연결이익이 개별이익에 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의적으로 검증하였다. 학계 및 실무계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킨 개별기업 연결재무제표와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김권중과 남상오(1994)는 개별기업 연결재무제표와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의 상대적인 유용성을 검증한 결과 미약하나마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를 지지하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감사받은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정보의 유용성을 전성빈(1994)의 연구에서는 보다 강력한 연결정보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결이익정보와 연결매출정보는 4월말 전후의 기간동안은 누적초과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결감사보고서 일자 전후를 검증기간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이익정보만 일별초과수익률과 유의적으로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태(1995)는 1992년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1992년 7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를 의무화한 연결재무제표 공표시 거래량 변동에 대한 실증증거를 제시하는데 있다.

만약 연결재무제표 공시시점 전후로 거래량에 있어 유의적인 변화를 발견하면 연결재무제표 공시는 정보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또한 추가적으로 거래량과 비기대이익의 상관관계에 관한 분석에서는 연결이익의 기대치로 당해연도의 개별이익을 기대치로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전년도의 연결이익을 사용한 경우에 거래량과 비기대이익은 서로 관련되어있다는 결론이며, 또한 회계정책면에

서 볼 때 연결감사보고서는 개별감사보고서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8주나 늦게 공포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적시적이지 못하였다.

이종천·김문철(1995)은 남상오 교수와 이만우 교수의 연구가 주로 연결회계 정책에 관한 논의인데 반해 이들의 논문은 연결회계기준의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폭넓게 제시함으로써 현행연결회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영병·이호열(1997) 경제적 환경의 차이는 상호의존성, 부채계약비용, 기업의 명예와 신용, 연결회계비용, 해외자금의존도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영업과 재무적 측면의 상호의존성 및 부채비율의 개선 효과가 반영되는 기업의 명예와 신용은 연결재무제표의 자발적인 공시유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 동안의 많은 연구가 연결회계의 유용성 및 개선방안과 연결재무비율분석 등의 많은 연구 발표가 있었다.

2. 聯結財務諸表 監査報告書 提出對象 業體現況

1999년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제출대상 업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O	기업 집단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업체	총계
1	현 대	현대증권, 현대투자증권,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종합금융, 현대백화점, 현대중공업, 하이닉스반도체, 현대미포조선, 현대기업금융, 현대산업개발, 현대종합상사, 현대건설, 현대하이스코, 현대자동차, 현대정유, 현대시멘트, 현대모비스, 현대정보기술, 현대엘레베이트	20
2	삼 성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증권, 삼성생명보험,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공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테크윈, 삼성전기, 삼성코닝,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삼성에버랜드, 엔에스에프	14
3	대 우	대우증권, 대우인터내셔널, 대우건설, 대우전자, 대우통신, 대우종합기계, 파츠닉, 대우조선공업	8
4	L G	엘지씨아이, LG-Caltex정유, LG philips LCD Co, Ltd.,	3
5	S K	SK건설, SK케미칼, 에스케이엔론	3
6	한 진	한진해운, 한진, 한진중공업	3
7	쌍 용	쌍용건설, S-Oil, 쌍용양회공업, 쌍용, STX	5
8	한 화	한화증권, 한화석유화학, 한화	3

9	롯데	롯데리아, 롯데물산	2
10	한솔	한솔제지, 한솔텔레콤, 한솔전자, 한트라	4
11	두산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3
12	동부	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증권, 동부건설, 동부제강, 동부한농화학	5
13	한라	한라콘크리트, 한라건설, 한라공조	3
14	고합	고합	1
15	코오롱	코오롱, 코오롱티엔에스, FnC코오롱, 코오롱건설	4
16	동양	동양종합금융증권, 동양오리온투자신탁증권, 동양캐피탈, 동양현대종합금융, 동양물산기업, 동양메이저, 동양제과, 동양전선, 동양화학공업, 동양매직, 동양제철화학, 디피씨, 동양석판	13
17	진로	진로	1
18	해태	이티로닉스	1
19	새한	새한미디어, 새한, 휴닉스, 다함이텍, 아이텍스필	5
20	강원 산업		0
21	신호	신호제지, 신호유화	2
22	기타		257
	계		360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00.

IV. 聯結財務諸表 監査意見 分析

1. 標本選定과 監査意見의 年度別 推移

<표 III-1>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대부분이나 그 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의견거절비율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적정의견의 비율이 개별재무제표의 감사의견과는 달리 지배회사의 상장여부에 따라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한정의견의 주요원인은 해외종속회사를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연결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종속회사의 감사 미실시에 의한

감사범위제한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연결재무제표 제출회사의 감사의견중 한정 의견과 의견거절의 사유를 보면 한정 의견 38사중 16사는 해외현지법인이 감사를 받지 않아 감사범위제한으로, 나머지 22사는 기타의 감사범위제한 및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것이었으며, 의견거절 10사중 계속기업으로의 존속이 의문 시되는 1사를 제외한 9사는 모두 감사범위제한에 기인된 것이다.

<표 III-1> 연결재무제표 감사의견 현황

(단위 : 사, %)

구 분	1997. 12 결산법인		1998. 12 결산법인		1999. 12 결산법인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적 정 의 견	420(230)	86.8(87.8)	405(216)	86.7(88.2)	311(181)	86.4(85.4)
한 정 의 견	56 (31)	11.6(11.8)	53(27)	11.4(11.0)	38 (24)	10.5(11.3)
부 적 정 의 견	-	-	-	-	1 (-)	0.3 (-)
의 견 거 절	8 (1)	1.6 (0.4)	9 (2)	1.9 (0.8)	10 (7)	2.8 (3.3)
계	484(262)	100.0	467(245)	100.0	360(212)	100.0

주 : ()는 상장법인임.

2. 他監査人의 意見 活用現況

<표 III-2>에 의하면 감사인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나 재무제표 구성항목에 대하여 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자기책임하에 활용할 수 있다(회계감사기준 제31조 및 33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지침 제15조 참조). 연결재무제표 제출법인중 종속회사와 지분법적용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타감사인을 활용한 회사는 1998년까지 증가되어 왔으며, 따라서 타감사인 활용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타감사인의 감사의견 활용은 개별재무제표를 다시 감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종속회사의 수가 많아짐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타감사인 활용시 이러한 사실을 감사보고서 본문에 기재하여 지배회사의 개별 재무제표 감사인과 책임한계를 구분하고 있다.

<표 III-2> 타감사인의 의견 활용 현황

(단위 : 사, %)

구 분	1997. 12 결산법인		1998. 12 결산법인		1999. 12 결산법인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타감사인 활용	300(178)	62.0(67.9)	327(196)	70.0(80.0)	250(157)	69.4(74.1)
타감사인미활용	184 (84)	38.0(32.1)	140 (49)	30.0(20.0)	110 (55)	30.6(25.9)
계	484(262)	100.0	467(245)	100.0	360(212)	100.0

주 : ()는 상장법인임.

3. 從屬法人의 實態

<표 III-3>에 의하면 연결대상에 포함된 국내외 종속회사수 및 지분법적용대상회사수가 1998년과 비교하여 모두 감소하였으나, 이는 연결대상회사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1사당 평균 국내외 종속회사수와 자본법적용회사수를 비교할 경우 '98년과 비교하여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는 회사의 사업다각화가 분사 및 지분인수 등의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업범위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확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I-3>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단위 : 사)

구 분	연결작성 종속회사수								
	국내			해외			계		
	1997	1998	1999	1997	1998	1999	1997	1998	1999
종속회사수	851	771	539	828	986	730	1,679	1,757	1,269
(1사당 평균)	(1.8)	(1.7)	(1.5)	(1.7)	(2.1)	(2.0)	(3.5)	(3.8)	(3.5)
지분법적용회사수	543	425	484	145	223	222	688	648	706
(1사당 평균)	(1.1)	(0.9)	(1.3)	(0.3)	(0.5)	(0.6)	(1.4)	(1.4)	(2.0)
계	1,394	1,196	1,023	973	1,209	952	2,367	2,405	1,975
(1사당 평균)	(2.9)	(2.6)	(2.8)	(2.0)	(2.6)	(2.6)	(4.9)	(5.2)	(5.5)

<표 III-4>에 의하면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종속회사를 분류하면, 지분율을 50% 초과하여 소유하는 종속회사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9년도에는 1,037사로 80%를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 지분율기준에 의한 종속회사수 현황

(단위 : 사)

구 분	종속회사수		
	1997	1998	1999
50% 초과 소유	1,291 : 76.9%	1,357 : 77.2%	1,037 : 81.7%
30% 초과 50% 이하 소유	359 : 21.4%	333 : 19.0%	232 : 18.3%
30 % 이하소유 및 간접지배	29 : 1.7%	67 : 3.8%	-
계	1,679 : 100.0%	1,757 : 100.0%	1,269 : 100.0%

<표 III-5>에 의하면 종속회사수를 기준으로 지배회사를 분류하면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수가 1사 및 2사 내지 5사인 경우는 감소하고 6사이상인 경우는 증가하고 있다.

<표 III-5> 종속회사수 기준에 의한 지배회사수 현황

(단위 : 사)

구 분	지 배 회 사 수					
	1997		1998		1999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1사	233(72)	48.1(27.5)	229(70)	49.0(28.6)	246(69)	30.7(32.6)
2~5사	182(125)	37.6(47.7)	166(112)	35.6(45.7)	155(101)	19.4(47.6)
6사 이상	69(65)	14.3(24.8)	72 (63)	15.4(25.7)	399(42)	49.9(19.8)
계	484(262)	100.0	467(245)	100.0	800(212)	100.0

주 : ()는 상장법인임.

4. 監查報告書 特記事項

<표 III-6>에 의하면 연결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 역시 지난 3년간 계속 증가

하는 추세이며 그 내용은 개별 감사보고서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단지, 연결 재무제표의 특성상 종속회사의 변동 등 연결범위와 관련된 사항이 추가로 기재되고 있으며, 1999년도 특기사항으로 특이할만한 것으로는 개별감사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및 추정의 변경내용,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기업개선작업 등에 관한 내용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II-6> 연결감사보고서 특기사항 내용

(단위 : 건)

구 분	건 수		
	1997	1998	1999
채권의 회수가능성, 소송사건의 계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우발손실 및 불확실성의 내용	62 (48)	34 (26)	26 (18)
회사가 계속기업 존속여부 의문시 그 내용	248(158)*	253(158)*	220(151)*
합병, 영업양수도, 신규사업의 진출, 공장매각 등으로 주요영업환경의 변화내용	24 (13)	77 (50)	63 (51)
주주, 임원,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	39 (11)	46 (23)	68 (39)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주요사항	75 (59)	74 (58)	48 (33)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및 추정의 변경내용	174(131)	47 (34)	198(126)
산업합리화계획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예외인정 내용	3 (3)	3 (3)	3 (3)
연결범위(종속회사의 변동등),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내용	95 (69)	125 (88)	123 (98)
기업개선작업(work-out plan) 관련내용	-	20 (18)	27 (23)
2000년(Y2K) 표기문제 관련 내용	-	38 (29)	-
자산재평가 관련 내용	-	125 (85)	22 (14)
계약이전(P&A)에 의한 자산·부채인수 관련 내용	-	5 (5)	-
증자·감자 관련 내용	-	22 (13)	37 (29)
기타감사보고서 이용자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84 (63)	75 (51)	66 (43)
계	804(555)	944(641)	901(628)

주 : ()는 상장법인수 임.

* IMF로 인한 불확실성(97년 : 238건, 98년 : 221건, 99년 : 140건) 포함.

V. 結 論

1974년 7월 연결재무제표제도가 도입한 이래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여부를 기업의 자유의사에 맡겨오다가 1992년 4월 증권거래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연결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의견을 사업보고서에 첨부토록 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의 부도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연결회계정보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가 국가적인 중요한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연결감사보고서의 내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분석 3년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대부분이나 그 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의견거절비율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연결대상에 포함된 국내외 종속회사 수 및 지분법 적용대상회사수가 1998년과 비교하여 모두 감소하였으나, 이는 연결대상회사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1사당 평균 국내외 종속회사수와 지분법 적용회사 수를 비교할 경우 1998년과 비교하여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는 회사의 사업다각화가 분사 및 지분인수 등의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업범위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확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연결감사보고서 특기사항 내용도 연도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분석을 감안한 연결회계감사의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의견이 정보이용자들에게 정보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또한 연결재무제표 공시는 회계정보효과 및 유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參 考 文 獻

1. 김권중·남상오(1994), “연결회계정책 정립을 위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연구 제23호.
2. 김정원·정규언(1994), “연결재무제표의 추가적인 정보가치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23호.
3. 김지홍(1995),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정보의 차이,” 회계저널 제3호.
4.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2000), 회계자료실(<http://fsc.go.kr>).
5. 고정섭(1995), 연결회계의 실태와 개선, 회계 제21호, 한국공인회계사회.
6. 고정섭(1997), 연결재무제표론, 다산출판사.
7. 남상오(1980), 우리나라 그룹기업의 회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8. 박상봉(1999), 연결재무제표와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지산대학, 논문집.
9. 박성환(1995), “연결회계자료의 정보효과,” 경영학연구 제24권 제4호.
10. 세동회계법인(199), 연결재무제표해설.
11. 이대선(1997), 연결재무제표론, 다산출판사.
12. 이종천·김문철(1995), “우리나라 연결기준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과 개선방안,” 회계저널 제4호.
13. 이종천·이재경(1995), “연결재무제표기준 및 합병회계준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저널 제4호.
14. 원정연(1984), 연결재무제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5. 전성빈(1994), “감사받은 연결재무제표의 정보효과,” 회계학연구 제18호.
16. 전춘옥(1995), “연결재무제표의 개선과 국제화방안,” 상장협 31.
17. 정연해(1996), 연결재무제표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동의논집.
18. 최경수(1985), 기업결합에 따른 연결재무회계의 형성에 관한 연구.
19. 황인태(1995),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거래량정보를 이용하여,” 회계학연구 제20호.
20. 審場嘉一郎外(1997), 聯結財務諸表-理論, 實務, 演習-中央經濟史.
21. 會田義雄(1975), 企業結合會計, 中央經濟史.

22. AICPA, ARB, No. 51, 1959, p. 1.
23. Maurice Moonits(1951), *The Entity Theory of Consolidated Statements*, Brooklyn : Foundation Press, Inc.
24. Motorn Backer(1955), *Handbook of modern Accounting Theory*, Prentice-Hall, Inc.
25. IASC(1970),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3 : Consolidated Statements.
26. Walker, R.(1976), "An Evaluation of Information Conveyed by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27. IASC(1977),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3 :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28. Whittred, G.(1986), "The evolu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ing in Australia," *Abacus*, September.
29. Whittred, G.(1987), "The Derived Demand for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December.
30. Heian, J. B. and J. Thies(1989), "Consolidation of Finance Subsidiaries : \$ 230 Billion in Off-Balance-Sheet Financing Comes Home to Roots," *Accounting Horizons*, March.
31. Lowe. H. D.(1990), "Shortcomings of Japanes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ccounting Horizons*, September.
32. Pacter P.(1992), Consolidation : An Overview of the FASB DM., *Journal of Accountancy*, April.
33. FASB Discussion Memorandum, *Consolidation Policy and Procedures*, 1992.
34. Bierman, Jr. H.(1992), Proportionate Consolidation and Financial Analysis, *Accounting Horizons*, December.

Abstract

A Study on Auditor's Opinion about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Park, Sang-bong

Since first introduced on July 1974,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had been concluded or not depending on decision-makings by companies. But the Securities and Exchange Law as revised on April 1992 specified that any listed corporation must ad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their auditor's opinion to its business report. foreign-based corporations became subject to the conclusion of the sheets and equity method from the time of business closing on Dec. 1995. Now all of domestic and foreign-based corporations, whether they are controlling or controlled businesses, are subject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usiness bankruptcies and restructuring under the economic crisis since the late 1997 raised the necessity of the increased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of consolidated accounting information and significantly changed contents of consolidated audit report. An analysis over the past three years shows that auditor's opinions about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re mostly qualified opinions whose proportion is being gradually decreased, while rejected opinions are annually increasing in proportion. When compared to the year of 1998, the numbers of those controlled businesses, and companies under the equity method were all decreased, but rather increased when determined on the basis of such numbers per a corporation. This suggests that corporations are promoting business diversification through business separation and share acquisition and advancing into foreign markets as well as domestic ones. Especially, special contents included in consolidated auditing report show a tendency to increase annually. Based on all these findings, the strengthening

of accounting regulation will lead to providing more reliable information related to auditor's opinion about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raising the information effectiveness and validity of the statements as publicly notified.